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(추경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12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19.

발 의 자 : 추경호 · 김상훈 · 조정훈
김장겸 · 김기현 · 김정재
박충권 · 김미애 · 주진우
배준영 · 이종배 · 임종득
강대식 · 권성동 · 권영진
정점식 · 박대출 의원
(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하여주고 있음.

그런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상향시키는 것 외에 개인연금저축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금액의 연금계좌 납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금액의 연금계좌 납입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6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(안 제59조의3제4항).

법률 제 호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의3제4항 중 “300만원”을 각각 “600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금액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) 제59조의3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9조의3(연금계좌세액공제) ① ~ ③ (생략) ④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<u>300만원</u> (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<u>300만원</u> 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)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. ⑤ (생략)	제59조의3(연금계좌세액공제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600만원----- ----- -----600만원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	⑤ (현행과 같음)